2003년도평창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안 번호	11

제출년월일 : 2002. 11. 21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안 이유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거 2003년도 취득.처분할 군유재산에 대한 관리계획을 자체확정하고 군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첨부된 안과 같이 제안합니다

2. 주요 골자

◎ 2003년도 군유재산 취득,처분계획 심의대상은

⇒ 취득이 총 13건(46,646.2㎡) 4,555,962천원으로

- 토지 매입이 4건 27필지(43,219㎡) 702,242천원이고
- 건물 신축이 7건 14동(2,907.2㎡) 3,113,720천원이며
- 건물 증축이 2건 2동(520㎡) 740,000천원입니다

◎ 세부 내역은 별첨과 같습니다

3. 관계 법령

가. 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나. 평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

다.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기준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서

총 괄 표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천원)

구 분			합 계			상 반 기			하 반 기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취득	합계	토지	4	43,219	702,242	3	28,734	665,034	1	14,485	37,208
		건물	9	3427.20	3,853,720	8	2882.20	3,253,720	1	545	600,000
		기타	-	-	-	-	-	-	-	-	-
	매입	토지	4	43,219	702,242	3	28,734	665,034	1	14,485	37,208
		건물	-	-	-						
		기타	-	-	-						
	교환	토지	-	-	-						
		건물	-	-	-						
		기타	-	-	-						
	기타	토지	-	-	-						
		건물	9	3,427.2	3,853,720	8	2,882.2	3,253,720	1	545	600,000
		기타	-	-	-						
처분	합계	토지	-	-	-	-	-	-	-	-	-
		건물	-	-	-	-	-	-	-	-	-
		기타	-	-	-	-	-	-	-	-	-
	매각	토지									
		건물	-	-	-						
		기타	-	-	-						
	교환	토지	-	-	-						
		건물	-	-	-						
		기타	-	-	-						
	기타	토지	-	-	-						
		건물	-	-	-						
		기타	-	-	-						

2003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

회계명:일반회계

(단위:㎡, 천원)

일련번호	재산의 표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득사유	소유자
	지목	소재지	수량				
○ 토지매입 합계			43,219	702,242			
1	소계	토지 5필지	20,029	3,563	상반기	방림 체육공원 조성	
	임야	방림리 산608-1	860	153	"	"	김병흥
	임야	방림리 산608-2	2,579	459	"	"	윤문극
	임야	방림리 산608-3	3,570	621	"	"	고재용
	임야	방림리 산609-1	12,861	2,302	"	"	이정호
	임야	방림리 산604	159	28	"	"	평창군
2	소계	토지 15필지	14,485	37,208	하반기	자연휴양림	
	전	개수리 225	3,200	3,840	"	"	김윤석
	전	개수리 226	112	123	"	"	"
	전	개수리 227	1,851	2,166	"	"	김유신
	전	개수리 227-2	645	755	"	"	"
	전	개수리 238	509	560	"	"	김희일
	전	개수리 237	119	164	"	"	"
	전	개수리 245	799	357	"	"	"
	전	개수리 245-1	947	423	"	"	"
	전	개수리 245-2	879	393	"	"	"
	전	개수리 247	278	325	"	"	"
	전	개수리 248	172	201	"	"	"
	전	개수리 249	281	329	"	"	김용수
	전	개수리 738	645	1,561	"	"	김희일
	전	개수리 735-7	1,048	6,361	"	"	김용수
	전	개수리 735-2	3,000	19,650	"	"	방윤진
	소계	토지 7필지	7,700	656,114	상반기	시가지주차장조성사업	
	전	하진부 206-113	480	106,080	"	"	심영숙
	대지	하진부 206-83	119	48,195	"	"	이극순

회계명:일반회계

(단위:㎡, 천원)

일련 번호	재산의 표시			추정가액	취득 시기	취득사유	소유자
	지목	소재지	수량				
3	답	하리 58-51	1,627	392,107	"	"	김경영외20
	답	창동리 410	1,560	44,460	"	"	이진노
	답	창동리 410-2	1,602	42,453	"	"	이진노
	답	창동리 410-3	329	9,870	"	"	이진노
	전	대화9리 410-1	1,983	12,949	"	주차장부지매입	김윤수
4	답	여만리 357-34	1,005	5,357	"	농기계격납고 신축	박관순
○ 건축물 신·증축 합계			3,427.20	3,853,720			
1	소계	건물 5동	545	600,000	하반기	마을회관신축	신축
	철,콘	주진2리 290	109	120,000	"	"	"
	"	이곡리 88,90-1	109	120,000	"	"	"
	"	신2리 1110	109	120,000	"	"	"
	"	상안미3리 86-4	109	120,000	"	"	"
	"	이목정리 578-1	109	120,000	"	"	"
2	철,콘	하진부744-1	312	420,000	상반기	진부궁도장신축	"
3	철,콘	창리 608	330	500,000	상반기	복지회관 피로연장증축	평창군
4	철,콘	계촌리 1410-1	326.88	350,000	상반기	복지회관 피로연장신축	"
5	철,콘	대화리 1001-15	330	700,000	상반기	복지회관 (목욕탕)신축	"
6	소계	건물 4동	396	400,000	상반기	경로당신축	
	철,콘	마하리 153	99	100,000	"	"	국(산림청)
	철,콘	진조리 47-3	99	100,000	"	"	박재훈외2
	철,콘	두일1리 250-4	99	100,000	"	"	이경수
	철,콘	횡계5리	99	100,000	"	"	
7	철,콘	방림리 1263-6	337	443,720	상반기	보건지소신축	
8	철,콘	종부리 504	190	240,000	상반기	장례식장증축	평창군
9	경량철	여만리 357-34	660	200,000	상반기	농기계격납고 신축	

◆ 관계법령 발췌

1. 지방재정법

제77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할 공유재산의 범위 및 관리계획의 작성기준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②법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 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1. 1건당 예정가격이 취득의 경우에는---(시군의 경우 1억원이상)---예정가격의 기준은 토지에 있어서는 개별공시지가로 하고, 건물 및 기타 재산에 있어서는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2. 토지에 있어---취득의 경우 1건당 (1,000㎡ 이상)---

3.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7조(공유재산심의회): ①법 제78조의 규정에의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은 다음 각호의1과 같다.

1.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 사항
2. 기타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200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작성지침

◎ 재산의 취득기준

가. 2003년도에 유상 무상을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고자 중요재산이 대상

○ 매입, 기부채납, 신축, 증축, 양여취득, 교환, 무상귀속 등

나. 토지를 취득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토지를 우선 취득한다.

○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 수행에 필요하거나 장차 필요한 토지
○ 공유재산의 집단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토지
○ 새로운 개발 예정지로서 장차 공공청사 등 공공목적에 필요한 토지
○ 생산목적에 직접 사용되고 있지 않은 유휴토지
○ 기존 공유재산의 가치증대를 위하여 필요한 토지

◎ 재산의 처분기준

나. 재산의 매각기준

(1) 보존부적합 재산의 매각기준

(가)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재산의 규모 형상 등으로 보아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매각할 수 있다.

① 일단의 토지 면적이 --- 700㎡ 이하인 영세규모 토지.

(나)일단의 토지면적이 --- 2000㎡이하로서 81.4.30. 이전 부터 공유재산 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동 건물 바닥 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 (건물 바닥면적의 2배가 상기 (가)①의 규모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규모의 면적 범위내의 토지)를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

(라)⑥ 재산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으로 보아 당해 공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으나 인접 사유토지와 합친다면 토지의 효율성이 제고될수 있다고 인정되거나 소규모 공유지 매각을 제한함으로 인하여 인접 대규모 사유지의 효용성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로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정가격이 1천만원 이하인 재산